

뉴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저축약관

제 1 조 (저축의 목적) 이 저축은 판매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제 5 조 제 1 항에서 정한 저축종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금지급기준일”이라함은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저축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 날중 나중일(이하"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한다.) 및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도 첫영업일을 말한다. 다만,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저축자의 연령이 만 55세가 되는날 중 나중일 이후이어야 한다.
2. “약정연금지급일”이라함은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금지급주기별 해당연월의 상당일을 말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상당일이 없을 경우 상당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로 하며, 상당일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로 한다. ('02.12.2 본조개정)
3. “연금지급개시일”이라함은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4. “저축계약의 이전”이라 함은 저축자의 청구에 따라 제 5 조 제 1 항 각호 종목의 저축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01.3.2 본호신설)

제 3 조 (가입대상) 이 저축은 만 20 세이상의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 4 조 (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저축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저축자가 저축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저축종목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저축종목 및 방식) ① 저축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뉴개인연금채권투자신탁 (이하 "채권형"이라 한다)
2. 뉴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② 저축자는 월납입식 또는 분기납입식으로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매회 1 만 원 이상 저축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제 6 조 (저축기간) ① 저축기간은 다음 각호의 적립기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적립기간 : 10 년이상 연단위
2. 거치기간 :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3. 연금지급기간 : 5 년이상 연단위

② 저축자는 적립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 년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축자는 저축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 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저축재산평가금액이 120 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 년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제 7 조 (연금의 지급개시) ① 회사는 저축자가 별도로 연금지급개시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저축금을 10 년이상 적립하고 저축자의 연령이 만 55 세가 경과된 후에는 저축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개시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기간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금의 지급방법) ①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현재 저축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고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text{연금지급액} = (\text{연금지급일 현재 잔고좌수} \div \text{잔여연금지급회수}) \times \text{연금지급일 현재 1,000 좌당 기준가격} \div 1,000$$

②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 개월 단위, 6 개월 단위 또는 1 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기간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최초 연금지급기준일로 한다.

⑤ 저축자가 약정연금지급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MMF 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대체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 (종목의 전환) ① 저축자는 저축기간중에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매년 4 회에 한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02.12.2, '09.6.29 본조개정)

② 저축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형에서 혼합형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채권형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환매한다.
2. 혼합형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매입한다.

③ 저축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혼합형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환매한다.
2. 채권형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매입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 2 항의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로 한다.
2. 제 3 항의 영업일은 한국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 및 한국선물거래소를 포함한다)의 개장일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한다.

제 9 조의 2(저축계약의 이전) ① 저축자는 저축기간중 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저축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01. 3.2 본조신설)

② 제 1 항에 의한 저축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저축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저축자의 이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③ 제 1 항에 의한 저축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해당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일괄 이전처리한다. 이때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일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 접수통보를 받은 날로 한다.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저축계약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에 한한다.

제 10 조 (저축계약의 중도해지) ① 저축자가 연금지급 이외의 형태로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처리한다.

② 저축자가 이 저축에 가입한 후 가입자격위반 또는 저축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 되거나 적립기간 종료일 현재 저축금액이 120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저축자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해계좌를 중도해지 처리 할 수 있다.

제 11 조 (세제혜택 등) ① 저축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저축자가 저축기간중 중도해지하거나 제 10 조 제 2 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저축자가 이 저축으로 인하여 이미 받은 세제상의 혜택을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제 12 조 (환매수수료) ① 저축자가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때에는 "뉴(NEW)개인연금 투자신탁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저축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2.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
3. 따로 정하는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의하여 공사채 투자신탁 임의식저축을 한

- 수익증권 저축자가 이 저축을 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때 다만, 이 저축을 한 후 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징구기간 만료 전에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때에는 이미 면제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4.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때
 5.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때. 다만, 저축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에 제 2 호 및 제 5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미 면제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때

제 13 조 (통장에 의한 거래) ①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개인연금투자신탁수익증권 저축통장(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증, 현금카드, 자동대체 및 기타회사가 정하는 거래약정 등에 의한 경우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거래 할 수 있다.

② 현금카드 또는 자동대체 기타 거래약정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 조 (권리행사)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회사에 신고된 인감(또는 서명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적립증명서 발급등) ① 회사는 제 11 조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저축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연금투자신탁 수익증권저축 적립증명서"(이하 "적립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저축자가 중도해지하거나 가입자격위반 또는 저축한도초과 등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적립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도장 또는 현금카드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곧 회사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구술 등으로 영업시간중에 신고하되 지체없이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등은 회사가 이를 접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간내에 전산입력 등을 마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 1 항의 신고의 철회는 회사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7 조 (통장, 카드등의 재발급) ① 제 16 조에서 정한대로 저축자가 저축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고인감 등의 사고신고를 한 경우에 회사는 저축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재발급 또는 변경처리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두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1 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수 있다.

제 18 조 (통지의 방법) ① 회사가 저축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로 서면이나 전화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난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회사의 책임한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제신고서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회사에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의 처리를 한 경우
2. 저축자가 제 16 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누설되어 저축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 20 조 (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거래신청서 또는 저축통장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처리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1 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저축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게 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 회사는 이를 영업소내에 1 월이상 게시하고 저축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제 22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서 정하는 게시기간 내에 저축자가 이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축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저축자에 대한 공고) 회사가 저축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제 23 조 (양도의 금지등) 저축통장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없이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24 조 (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신탁약관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저축계약에 관하여 저축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저축자의 선택에 따라 저축자의 주소지, 저축자가 거래하는 회사 또는 대리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부 칙(2000.8.19)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1)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저축계약 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 15 조의 저축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내용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저축자의 중도해지시에도 납입증명서 발급가능)

부 칙(2002. 12. 2)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내용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연금지급일 변경 :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

부 칙(2009. 6. 29)

(시행일) 이 약관의 변경내용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신탁의 전환 횟수 변경 : 연 2회 → 연 4회)